

문서번호	안전처-1919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20.04.10.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43호

★차장	팀장	안전처장	이사장	
협 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020.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시행일:2020.1.16.)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및 자율 산업 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 ~ 안 제5조)

- 개정 법령에 따른 적용 용어 정의의 재정립(안 제3조)
 - 재해 : (현행)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罹患) 되는 것 (개정안)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 산업재해란 임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2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현행 유지(안 제6조)
- 조직별 수행 직무를 개정 법령에 따라 구체화(안 제7조~안 제1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수행 직무는 개정법령을 반영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5조)

- (구성)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위원과 이사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을 11명이내의 동수로 구성
- (운영)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소집
- (심의·의결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20조)

- (교육계획) 주관부서장은 교육 계획을 매년 작성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 (교육종류)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물질안전보건 교육 및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
- (실시방법) 정기교육 등 직원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우선 실시하며 필요시 안전·보건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음

마.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38조)

- (계획수립) 주관부서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기본 계획을 수립
- (공단의 의무) 공단은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함
-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단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작업중지) 주체 세분화

구분	현 행	개 정 안
작업중지	(작업중지 기준) ①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 (중략)---경우에는 <u>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u> -----.	(사업주의 작업중지)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 (직원의 작업중지)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

바. 직원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평가 강화(안 제39조 ~ 안 제42조)

- (계획)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직원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함
- (실시)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직원을 참여시켜야 함
- (주기)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최초평가 후 정기평가를 매년 실시 함. 수시평가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등을 대상으로 위험도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3조 ~ 안 제47조)

- 처리절차, 긴급조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대한 주관·소관 부서별 수행 직무 정립

아. 상벌 및 기타(안 제48조 ~ 안 제51조)

-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 2020.1.16.)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기획재정부 지침
- 규정관리규정 제10조(절차) 및 제12조(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정개정심사 완료

라. 절 차 : 이사장 방침 후 공포·시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공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②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사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재해”란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히 산업재해란 임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사고”란 공단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관리감독자”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부서장, (현업)팀장, 관리소장 등을 말한다.
12.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말한다.
13. “근로자대표”란 공단 단체협약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한다.
14. “주관부서”란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본사 안전부서를 말한다.
15. “소관부서”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공단의 모든 업무는 안전·보건업무를 우선 고려하여 조치한다.

- ② 주관부서에서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업무를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받은 부서장은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 공단은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제반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이사장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목표 설정 및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0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관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7.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단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안전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공단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보건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 ③ 공단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공단은 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직원의 건강 보호 조치
2. 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은 근로자대표가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4. 작업환경측정, 직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5.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6. 직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7.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8.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 공단은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1명 내외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직원

③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이사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 이상

④ 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15조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⑦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심의·의결 사항)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소속 직원에게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직원에게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 여건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별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대상 및 내용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실시하며,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교육실시 방법) 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주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및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과 공단 자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제20조(교육관계서류 보존) ① 관리감독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교육 결과서류(교육일지, 서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교육관계 서류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관리

제21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 : 매년 1월말까지 수립

2. 안전기본계획 :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수립

② 주관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기본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소관부서장은 사업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② 공단은 건설물을 발주·설계 및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발주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단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
4.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사업장내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공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조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② 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이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6조(사업주의 작업중지) ①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책임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직원의 작업중지) ①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체계에 따라 직위자에게 보고하고, 부서장 등 직위자는 안전·보건관리 등의 제반사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급박한 위협으로 작업을 중지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안전보건 점검) ① 관리감독자 또는 주관부서는 직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공단은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관리하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 끼임점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제30조(안전검사) ① 공단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안전표지)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표지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단은 유해·위험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단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공단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이하 “대상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부서장(이하 “취급 부서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취급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급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시간만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⑤ 취급 부서장은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물질의 명칭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제5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34조(작업환경측정) ① 공단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 호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공단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 3. 해당 직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진단) ① 공단은 재직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특수검진포함)을 실시한다.

- ②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 및 공단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검진대상자는 즉시 공단에게 통보하여 제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 ③ 공단은 건강진단 결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무부서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후관리 조치 결과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단은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단이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질병자 근로금지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보건시설) 공단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위험성평가

제39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2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공단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사고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정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⑤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공단은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공단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4조(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제4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공단은 중대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주관부서장 주도하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고 및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주관부서장은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소관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장은 사고에 대한 개선일정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⑤ 공단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제46조(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① 주관부서 또는 소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분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소관부서장은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체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상벌 및 기타

제48조(포상)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안전목표 달성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연간 안전보건경영 활동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단의 관계 규정 및 방침을 따른다.

제49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3.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50조(변경절차)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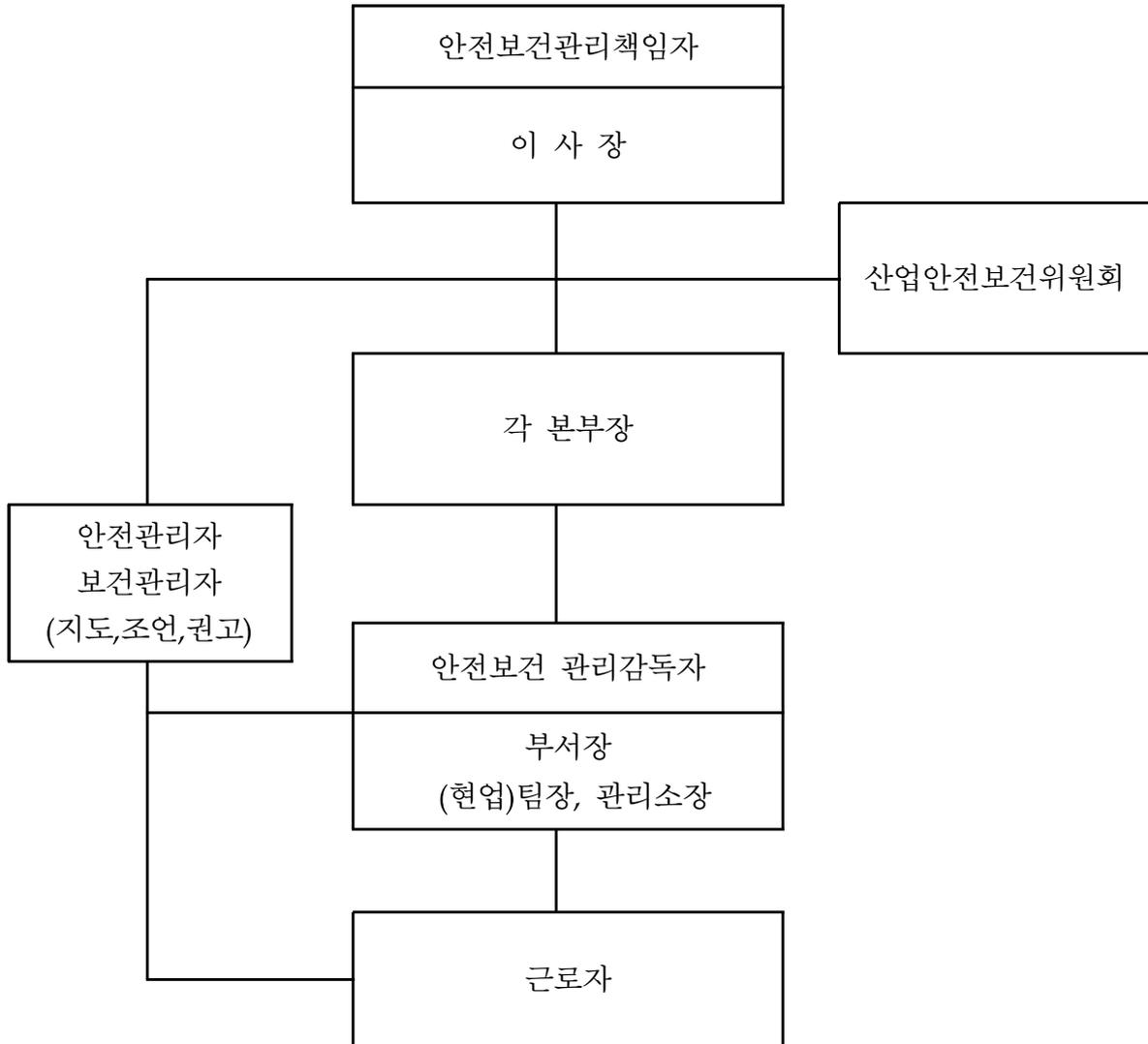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내 게시판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추 두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별지 제2호 서식] (제20조 제1항 관련)

안전보건교육 서명부

연번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직급	성명	서명
1											
2											
3											
4											
5											
6											
:											

※ 교육사진 별도첨부